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8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김정호 · 이연희 · 안태준
서왕진 · 박해철 · 전진숙
윤후덕 · 이수진 · 허종식
신영대 · 최혁진 · 박 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용 중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나 방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일본(번호판), 독일(보험표지), 싱가포르(등록표지)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번호판 부착 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데,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관리하기에 앞서 우선 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이용 단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6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5(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번호판 부착의무)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번호판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제4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제6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식별
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4. (현행과 같음) 15.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u><신설></u>	제69조의5(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번호판 부착의무)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제84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4. (생략) <u><신 설></u> ⑤ · ⑥ (생략)	<u>해당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붙여야 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번호판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24. (현행과 같음) 25. 제6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u>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u> ⑤ · ⑥ (현행과 같음)
---	--